

## 충청북도농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민교육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충청북도농민교육원조례"를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설치) 도민의 정신교육, 과학영농기술교육과 기능인력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  
도민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 (업무)중 각호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민정신교육
2. 영농기술교육
3. 농기계교육
4. 기능훈련교육
5. 기타 시책상 필요한 교육

제4조 (원장) 제2항중 지휘감독한다 다음에 "다만 제3조, 제3호내지 제5호의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를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p>제명 : <u>충청북도 농민교육원 조례</u></p> <p>제1조 (설치) <u>농촌근대화의 역군의 될수</u> <u>있는 영농후계자 양성과 과학적 영농</u> <u>기술 보급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민교육</u> <u>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u></p> <p>제3조 (업무)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새마을교육</u></li> <li>2. <u>영농기술교육</u></li> <li>3. <u>농기계훈련</u></li> <li>4. <u>교육용 각종실습장 운영</u></li> <li>5. <u>기타 농촌근대화시책상 필요한 업무</u></li> </ol> <p>제5조 (원장) ① .....</p> <p>②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u>다만 제3조 제3호내지</u> <u>제5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농촌</u> <u>진흥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u></p>	<p>제명 : <u>충청북도 도민교육원 조례</u></p> <p>제1조 (설치) <u>도민의 정신교육, 과학</u> <u>농기술 교육과 기능인력양성을 위하</u> <u>여 충청북도 도민교육원 (이하 "교육</u> <u>원"이라 한다)을 둔다</u></p> <p>제3조 (업무)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도민정신교육</u></li> <li>2. <u>영농기술교육</u></li> <li>3. <u>농기계교육</u></li> <li>4. <u>기능훈련교육</u></li> <li>5. <u>기타 시책상 필요한 교육</u></li> </ol> <p>제5조 (원장) ① .....</p> <p>②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u>이하삭제</u></p>